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32066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예비적 피고	1. ○○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2. ○○광역시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변 론 종 결	2023. 9. 12.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98,426,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4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광역시와 피고 ○○광역시 ○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426,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9. 8. 30.부터 2019. 10. 7.까지 ○○ ○구 C에 있는 오피스텔용 건물(D 건물)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 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다음 약 1년이 지난 2020. 8. 24.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괄양도하였다.

나. ○○광역시 ○구청장은 B가 임대의무 기간인 4년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포괄양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 7. 1.경 B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2,720,27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B는 2021. 8. 31. ○○광역시 ○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조심 J로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B는 납부기한 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2022. 3. 15. 체납액이 전부 납부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다. B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4

는 2021. 9. 27.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하는 한편, 원고는 2021. 10. 25.경부터 B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22. 5. 30. B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로 청구인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폐지되는 유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자진 폐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폐지되는 유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을 폐지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가 이후에 공부상 말소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전에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바. 피고 ○○광역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2. 6. 13. B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B와 공동투자를 통해서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여 왔는데,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자진 폐업을 권장함에 따라 2020. 8. 19.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4

그런데 세무관청(○○광역시 ○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점을 들어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납입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 체납 기록등재를 하여 원고의 공동투자자 B가 코로나 19 피해 정부지원금 일체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였고, B를 청구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어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판단 지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피고 ○○광역시와 피고 ○○광역시 ○구에 부당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해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광역시와 피고 ○○광역시 ○구는 원고의 민원과 관련하여 제대로 권리를 구제해 주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2. 2. 28. 17:00경 ○○ ○구청 2청사를 방문하여 1층 화장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2022. 3. 1. 24:30 원고는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본인의 차량에서 청사 관리공무원의 차를 빼라는 소리에 의식을 되찾았다. ○○광역시 또는 ○○광역시 ○구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민원 신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권리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향후 10년간 예상치료비 100,000,000원 중 20,000,000원, 일실 손해 557,077,320원 중 200,000,000원, 원고가 이미 지급한 세금 납부액 23,426,760원, 위자료 55,000,000원의 합계 298,426,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4

가. 주위적 피고(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B와 동업관계에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판단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B와의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인이 아닌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심판이 법령에서 정한 법정처리기한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정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거나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배상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주위적 피고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21. 12.경 ○○광역시 ○구청과 ○○광역시에 공동투자자 B의 코로나19 피해 정부지원금 대출, 운영자금지원 등 일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다고 주장한다.

○○광역시 ○구청장은 ○○광역시의 위임을 받아 2021. 7. 1.경 B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1의 나. 내지 마.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4

그런데, 갑 제1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광역시, 피고 ○○광역시 ○구 소속 공무원이 원고나 원고의 동업자(B)의 각종 신청이나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법령에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22. 2. 28. 17:00경 ○○ ○구청 2청사 1층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광역시 또는 ○○광역시 ○구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자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보호조치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광역시 ○구 소속 공무원이 2022. 2. 28. 원고가 피고 ○○광역시 ○구 청사에 방문하여 1층 남자화장실에서 자살시도 등 극단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광역시 ○구는 원고가 당시 ○구청에 담당자를 찾아온 적도 없고, 항의를 한 적도 없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광역시 ○구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 ○○광역시 ○구 소속 공무원이 원고가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나 긴급구조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비적 피고들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고의, 과실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예비적 피고인 피고 ○○광역시,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청구는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4

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